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52호**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창업기업의 경영 조기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추진체계 >

TRACK	구분	지원대상	비 고
1. 진단 연계형	국내전문가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연중 수시·신청
	해외전문가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제조업 기술 분야	연중 수시·신청
2.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반기별 신청(공모)
	창업기업 컨설팅	일반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반기별 신청(공모)
	원스톱 창업지원	(예비)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연중 수시·신청

* (진단 연계형) 사전 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국내·해외전문가)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결 및 경쟁력 강화

* (수요자 선택형) 중소기업이 컨설팅 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컨설팅(지속성장, 창업기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결 및 경쟁력 강화

  - (원스톱창업지원) 창업 준비단계부터 완료까지 필요한 컨설팅을 연계하여 (예비) 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과 경영 조기안정화를 지원

나. 사업 규모 : 총 125억원

○ 진단 연계형**(국내전문가, 해외전문가)** : 57억원

○ 수요자 선택형 : 68억원**(지속성장 45, 창업기업 14, 원스톱 창업 9)**

다. 지원 조건

TRACK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진단 연계형		업력 7년 이상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년 (2개월/년 추가연장 可, 1회)
		업력 7년 미만	최대 20백만원	65%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컨설팅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창업기업컨설팅	최대 20백만원		정부 65%	
	원스톱창업지원	최대 8백만원			

라. 정부지원금 산출방식(진단 연계형(7년 이상),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총사업비	비율	최대 지원금액	산출방식
3천만원 이하	30~50%	15백만원	컨설팅 협약금액 × 5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22백만원	{15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27백만원	{2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5%)}
7천만원 초과		30백만원	{27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 단, 진단 연계형 및 수요자 선택형 內,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원스톱 창업지원'은 정액, 정률 지원

마. 선정 · 평가

TRACK		선정 절차	평가방식
진단 연계형		• 신청 · 접수 → **적합성 평가** → 선정· 협약 * '진단·컨설팅' 신청 절차는 동시 진행 가능	서면평가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 신청 · 접수 → **대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 · 협약	발표평가 (PT)
	창업기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 선정 · 협약	온라인평가

2 연중 수시 신청·접수 과제 (예산 소진시 까지)

가. 진단 연계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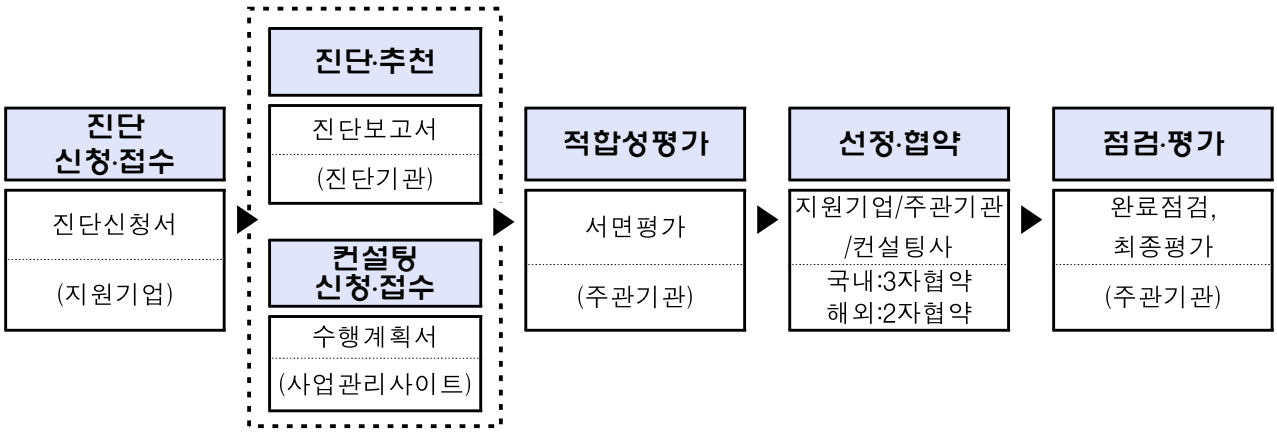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아래의 기업

과제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국내전문가 컨설팅	• 업력·업종 제한 없음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 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 환경경영, 新사업·상품기획, 제품기능 및 컨셉 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해외전문가 컨설팅	• 업력 제한 없음 • 제조업 기술 분야	첨단·핵심 기술 분야 (제품설계 및 해석, 신기술(제품)개발, 신공법 도입, 원가·품질개선 등)

□ 지원 조건

TRACK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진단 연계형 (국내전문가, 해외전문가)	업력 7년 이상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년 (2개월/년 추가연장 可, 1회)
	업력 7년 미만	최대 20백만원	65%	

□ 추진 절차



* "진단, 컨설팅" 신청 절차는 동시 진행 가능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	[별첨 5] 참조	주관기관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 사업부	(전화) (02) 553-3808 (팩스) 02-553-3813	운영기관
콜센터		☎1357	

* ‘진단 연계형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나. 수요자 선택형(원스톱 창업지원)

□ 지원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세부 요건
원스톱 창업지원	•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정한 창업자로서, 붙임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중진공 정책자금 선정기업)

□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내용
사업타당성 분석		• 예비창업자 • 재창업자	400만원	•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등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경영전략, 마케팅, 생산·자금운용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200만원	
창업절차 대행	창업법인설립		200만원	• 상법회사, 농어업법인 설립지도 * 단,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인 경우 100만원 지원
	법인전환	• 창업 1년 이상 업력 7년 이내	200만원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절차 지도
창업공장 설립		• 예비창업자 • 재창업자 • 업력 7년이내	500만원	•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변경) 승인 등 * 단, 제조시설설치, 공장증설의 경우 200만원 지원

□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원스톱 창업지원	최대 8백만원	65%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 추진 절차

신청·접수	선정 평가	수행계획서 접수	협약체결	완료점검
수행계획서 (사업관리사이트)	온라인 평가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	지원기업/ 컨설팅사/주관기관 (3자협약)	온라인 평가 (지방중기청)

□ 문의처 및 연락처

기 관 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전화) 042-388-0322, 0323 (팩스) 02-6234-3107	주관기관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42-256-1072, 1070 (팩스) 042-256-1071	운영기관
콜센터		☎1357	

* '수요자 선택형(원스톱 창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3 반기별 신청·접수 과제 ('15년 상반기, 하반기)

가. 상반기 신청 · 접수기간 : '15. 2. 9(월) ~ 3. 13(금) 18시 까지

※ 하반기는 7월 초 공고 예정

나.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 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 환경경영, 新사업·상품기획, 제품기능 및 컨셉 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창업기업 컨설팅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지속성장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창업기업 컨설팅	최대 20백만원	65%	

□ 추진 절차

신청·접수	대면 평가	현장평가·선정	협약체결	점검·평가
수행계획서 (사업관리사이트)	PT 발표 컨설팅사/신청기업	최종 지원기업 선정 (지방중기청)	지원기업/ 컨설팅사/주관기관 (3자 협약)	완료점검, 최종평가 (지방중기청, 주관기관)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전화) 042-388-0322, 0323 (팩스) 02-6234-3107	주관기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2-6205-8121, 8123 (팩스) 02-569-8124	운영기관
콜센터		☎1357	

*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 시스템(www.smbacon.go.kr),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4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

가. 컨설팅기관 등록기준

■ **상근컨설턴트 7명 이상을 보유**하고,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 인력은 불인정.

■ 컨설팅대학원·창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중기청 지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 단,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수요자 선택형" 中, "원스톱 창업지원"만 수행 가능**하나, 위의 등록기준(상근 7명,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 충족 시 타 분야의 컨설팅도 수행 가능

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 컨설턴트 등록기준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2]**에 따른다.
* 중기청 지정 컨설팅 대학원의 졸업자(학위취득시)의 경우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 재학중의 실무수습 기간은 경력(최대 1년)으로 인정한다.
* 단, "수요자 선택형" 中 "원스톱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 해외전문가 등록기준

■ 해당 국가 과학자 협회 또는 은퇴 기술자 협회에 등록된 자
(예 : 독일SES, 프랑스ECTI, 일본 키타큐슈 협회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록 해외전문가로서 2회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타 해외전문가 등록기준은 **해외전문가 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3]**에 따른다.

라. 신청 및 등록방법 : 온라인(www.smbacon.go.kr) 신청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운영기관에 신청

마. 신청·등록 기간 : '15. 2. 9(월) ~ '15. 2. 27(금)

* 동 신청·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 등록 가능

바. 문의처 및 연락처

구 분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진단 연계형	국내전문가 컨설팅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 사업부)	(전화) 02-553-3808 (팩스) 02-553-3813
	해외전문가 컨설팅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 지원팀)	(전화) 02-6205-8121,8123 (팩스) 02-569-8124
	창업기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컨설팅 지원팀)	(전화) 042-256-1072 (팩스) 042-256-1071

5 기타 사항 [신청방법, 지원제외 대상 및 가점]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 신청기업은 당해연도 사업의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나. 지원제외 대상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원스톱 창업지원(종전 창업대행 포함)"을 기지원 받은 동일 창업자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다. 우대 가점 : 최대 5점 부여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싱글 PPM,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IMS인증,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PMS컨설팅 인증기업,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과제(과제책임자 또는 과제 참여율 30%이상인 경우)
- **(가점 5점)** 장애인 기업
- **(기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의 경우 인정되는 최대 가점(5점) 외에 추가 1점까지 가점 인정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라.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비 고
'15. 2. 23(월), 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 충남, 충북지역
'15. 2. 24(화), 14: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
'15. 2. 25(수), 14: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 경북지역
'15. 2. 26(목), 14: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 울산, 경남지역
'15. 2. 27(금), 14:00	한국화재보험협회(여의도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컨설팅 종합 관리시스템에 공지'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 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표 1-1] 원스톱 창업지원 대상 업종

○ 창업절차대행(창업법인설립, 법인전환) 이외의 세부과제는 제조업에 한함.

코드	표준산업분류 업종	세부과제별 해당 업종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설립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작성)
A (1~3)	농업 임업 및 어업	●	
B (5~8)	광업	●	
C (10~33)	제조업	●	●
D (35, 3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E (37~3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F (41, 42)	건설업	●	
G (45~47)	도매 및 소매업(지원제외) (단,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지원)	○	
H (49~52)	운수업	●	
I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X	
J (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 (64~66)	금융 및 보험업(지원제외) (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	
L (68,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68 부동산업 지원제외)	○	
M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1, 712, 7152, 7153 지원제외)	○	
N (7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O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X	
P (85)	교육 서비스업 (851~854 지원제외)	○	
Q (86,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단, 86 보건업은 지원제외)	○	
R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지원제외)	○	
S (94~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X	
T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X	
U (99)	국제 및 외국기관	X	

* ● : 모두 지원 / ○ : 일부지원 / X : 지원제외

[별표 2]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계(원)
특급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5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21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985,000
1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1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834,000
2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757,000
3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644,000
4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518,000
5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388,000

* 해당분야라 함은 사업 Track별 지원내용에 대한 컨설팅 분야를 말함
*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동일 기준 대비 1단계 상향(최대 2등급 이하)

[별표 3] 해외전문가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USD	JPY	EUR
1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1,000 이하	90,000 이하	740 이하
2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720 이하	65,000 이하	530 이하
3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50 이하	50,000 이하	410 이하

* 해당분야라 함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술분야를 말함

** 기술사 자격증은 일본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별표 4]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구분	□진단연계형(국내전문가) □진단연계형(해외전문가) □수요자선택형	구분	예비창업자 □ 여 □ 부		
신청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분야	대분류/중분류				
컨설팅 주제					
컨설팅 기간	20 . . ~ 20 . . (개월)				
컨설팅 금액					
산출 금액	천 원	할인 금액	천 원	최종 금액	천 원
정부지원금	천 원 (%)	기업부담금	천 원 (%)		
투입명수	총 명	투입일수	총 일 (M/D)		

신청기업	기 업 명			설립(예정)일	yyyy-mm-dd					
	사업자등록번호	*(예비창업자는 가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평가장소	□ 본사 □ 공장		전화번호						
	주 소	본사	우(-)			전화번호				
		공장	우(-)			전화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		업 태	1) 2)					
	주생산품	1) 2) 3)								
	재무 현황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원)	당기제품 제조원가 (원)	영업이익 (원)	당기 순이익 (원)	자산총계 (원)	부채총계 (원)	자본총계 (원)	유동비율 (%)
		20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시근로자수)*					
	우대사항 (각2점, 최대5점)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 수출유망중소기업 □ 여성기업 □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 사회적기업 □ IMS □ 싱글PPM □ 농공상 □ HACCP □ GMP □ PMS □ 우수그린비즈 □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과제 □ 장애인기업(5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경영혁신마일리지의 경우 최대 가점(5점) 외에 추가 1점까지 가점 인정								
총괄책임자 (신청기업)	성 명			휴대전화						
	직 위			e-mail						
	전 화			팩 스						
컨설팅기관	기업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근: 명 비상근: 명					
과제책임자 (컨설팅기관)	성 명			휴대전화						
	직 위			e-mail						
	전 화			팩 스						

컨설턴트	성명	상근여부	등급	M/D	성명	등급	M/D	성명	등급	M/D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총괄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자(또는 총괄책임자) : (직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표 5]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자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02-6678-4112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07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02-769-6818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용산구, 마포구
인천지역본부	032-450-0518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032-450-0575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031-259-7912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031-628-6896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031-496-1475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경기북부지부	031-920-6714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원지역본부	033-259-7612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033-655-8876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대전지역본부	042-866-0135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세종시, 옥천군, 영동군, 당진군,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041-621-3683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043-230-6813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043-841-3612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063-210-9924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063-460-9831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대구지역본부	053-601-5278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054-476-9329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동부지부	054-223-2042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053-212-3332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지역본부	062-600-3031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전남지역본부	061-280-8040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전남동부지부	061-724-1056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051-630-7404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지부	051-712-9669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울산지역본부	052-703-1132	울산시, 양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경남지역본부	055-212-1373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055-310-6616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055-756-3063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064-751-2053	제주시, 서귀포시

* 밑줄 친 지역은 공동 관할구역